

자료 97-03

정책토론회

# 韓·EU 酒稅協議 對備 酒稅制度 改編方向

1997. 4.

成 明 宰

---

本 論 文 에 실 린 內 容 은 筆 者 의 個 人 意 見 을 反 映 한 것 이 며 韓 國 租 稅 研 究 院 의 公 式 的 인 見 解 와 는 無 關 함 .

## 정책토론회 개요

- 주제 : 한·EU 주세협 의 대비 주세제도 개편방향
- 일시 : 1997. 4. 22(화) 10:00 ~ 12:15
- 장소 : 한국조세연구원 2층 대회의실
- 진행순서
  - 10:00 ~ 10:10 개회인사
  - 10:10 ~ 10:30 주제발표 : 한·EU 주세협 의 대비 주세제도 개편방향
  - 10:30 ~ 12:00 토론
  - 12:00 ~ 12:15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 사회자 : 金完淳 고려대 교수
- 발표자 : 成明宰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 : 金炳潤 OB맥주(주) 이사
  - 金永河 조선일보 논설위원
  - 朴宰完 성균관대 교수
  - 朴正姬 서울YWCA 사회문제부 위원장
  - 申英燮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辛鍾元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 李根京 재정경제원 재산소비세심의관
  - 李相碩 대한주류공업협회 전무이사
  - 鄭憲倍 중앙대 교수

(가나다 순)

# 目 次

I. 序 .....	1
II. 우리나라 酒稅의 現況과 酒稅率의 國際比較 .....	3
1. 酒種의 分類 .....	3
2. 酒種別 酒稅率 .....	3
3. 酒稅收入과 酒類消費 現況 .....	4
4. 日本의 酒稅 課稅現況 .....	7
5. EU 主要國의 酒稅率 體系 .....	8
III. 韓·EU 酒稅協議 推移 .....	10
1. 最近의 酒稅 關聯 韓·EU 兩者協議 .....	10
2. 最近의 韓·EU 酒稅協議 進行狀況 .....	10
IV. 日·EU 및 칠레·EU 酒稅協議 .....	12
1. 日·EU 酒稅協議의 結果 .....	12
가. 第1次 酒稅協議 .....	12
나. 第2次 酒稅協議 .....	13
2. 칠레·EU 酒稅協議의 進行狀況 .....	15
3. 示唆點 .....	16
V. 酒稅率 體系의 問題點과 改編의 必要性 .....	20
1. 우리나라 酒稅率 體系의 問題點 .....	20

2. 韓·EU 酒稅協議 關聯 懸案 .....	21
3. 飲酒와 國民健康 .....	22
4. 從價稅와 從量稅 .....	23
VI. 酒稅率 體系의 改善方案과 期待效果 .....	24
1. 蒸溜酒間 稅率 隔差 問題 .....	24
2. 燒酒와 보드카의 關係 .....	25
3. 酒稅率 體系 改編의 基本方向 .....	25
4. 改善方案 .....	27
가. 燒酒와 위스키間 代替關係가 없는 경우 .....	27
나. 蒸溜酒 稅率에 대한 알콜 도수 比例方案 .....	28
다. 蒸溜酒 稅率 一致方案 .....	28
라. 酒稅分 教育稅率의 改善方案 .....	29
마. 기타 酒類에 대한 酒稅率 調整方案 .....	29
바. 改善方案 綜合 .....	30
5. 期待效果 .....	32
가. 通商問題와 衡平性 및 外部不經濟 .....	32
나. 價格 및 物價效果 .....	33
다. 稅收效果 .....	35
VII. 맺음말 .....	38
參考文獻 .....	41

## 表 目 次

<表 1> 우리나라의 酒種 分類와 酒稅率(1997年 現在) .....	4
<表 2> 酒稅 收入(賦課基準) .....	5
<表 3> 最近의 酒類 出庫 動向 .....	6
<表 4> 日本의 酒稅 課稅現況 .....	7
<表 5> EU 主要國의 酒稅率(1992年 現在) .....	9
<表 6> 日本의 酒稅率 調整 .....	15
<表 7> 酒稅率의 改善方案 .....	31
<表 8> 酒稅分 教育稅率의 改善方案 .....	31
<表 9> 酒稅率과 教育稅率 調整에 따른 出庫價格 變化效果 .....	34
<表 10> 酒稅率과 教育稅率 調整에 따른 物價效果 .....	35
<表 11> 酒稅率과 教育稅率 調整에 따른 稅收效果 .....	37

## I. 序

- EC에서는 우리나라의 酒稅率 體系가 위스키를 비롯한 수입 주류에 대해 차별적이라고 하여 1990년대 초에 韓·EC 酒稅協議를 개최하였음.
  - EC는 우리나라의 酒稅를 從量稅 체계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였음.
  - 또한 위스키에 대한 주세율 및 관세율의 대폭 인하, 소주의 세율 인상, 교육세의 조정 등도 요구하였음.
  
- 1991년 5월 韓·EC 고위협의회 이후 수차례 걸친 협의를 통해 1993년에 주세율 체계 개편에 관해 합의하였음.
  - 양자합의에 따라 위스키에 대한 주세율이 1994년에 150%에서 120%로 그리고 1996년에는 다시 100%로 인하되었음.
  - 또한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관세율이 1994년에 40%에서 30%로 그리고 1996년에는 20%로 인하되었음.
  - 반면 소주에는 1995년부터 세율 10%의 교육세가 부과되기 시작하였음.
  
- 그러나 EU는 1996년에 소주(35%)와 위스키(100%)에 대한 주세율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하여 1997년 1월 17일 브뤼셀에서 韓·EU 酒稅協議를 가졌으며 동 협의에서 EU는 우리나라에 3월 15일까지 주세율 개편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음.
  - 이후 우리나라는 3월 중순에 EU측에 대하여 주세율 체계 개편안을 제시하고자 5월에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음.
  - 그러나 지난 4월 2일(4월 4일 접수) EU는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하여 WTO 체계 내에서 주세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또한 EU는 이와 별개

로 WTO 체제 밖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증류주협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를 WTO 분쟁 해결 절차에 회부하도록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을 준비중에 있음.
- 우리나라의 주세제도가 WTO에 제소됨에 따라 韓·EU 양자협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어야 하며 만약 합의에 실패하게 되면 WTO 분쟁 절차에 회부되어 패널이 구성됨과 함께 본격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가게 됨.
- 참고로 작년에는 日·EU 酒稅協議에서 소주와 위스키간의 주세율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EU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본이 패소한 바 있음.
  - 또한 최근 칠레와 EU간에도 酒稅協議가 전개되고 있는바 칠레의 피스코와 위스키간 주세율 격차 축소 분쟁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됨.
- 日·EU 酒稅協議에서 EU는 소주와 위스키간에 대체관계가 있다고 하고 양자간의 세율 격차 문제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주류 소비패턴을 볼 때 소주와 위스키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EU측의 주장은 부당함.
  -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日·EU 酒稅協議에서 결론이 내려진 바 있음.
  - 따라서 EU와 소주-위스키간의 주세율 격차 문제를 논함에 있어 신중한 대처가 요망됨.
- 대외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주세제도의 조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세의 과세체계 자체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만큼 차제에 주세제도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합리적 개편이 필요함.

## II. 우리나라 酒稅의 現況과 酒稅率의 國際比較

### 1. 酒種의 分類

- 酒稅法에서는, 酒精과 알콜分 1度 이상의 飲料를 酒類로 정의하고 있음.
  - 現행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는 酒精, 濁酒, 藥酒, 麥酒, 果實酒, 燒酒, 위스키, 브랜디, 一般蒸溜酒, 리큐르, 其他 酒類의 11가지로 구분됨.
  - 淸酒는 藥酒類에 포함됨.
  
- 現행 주세법에 의하면 보드카는 一般蒸溜酒에 해당됨.
  - 보드카는 제조공법상 소주와 거의 동일하나 여과시 자작나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一般蒸溜酒에 포함되고 있음.
  - 日本의 酒稅法에서도 보드카와 소주를 별개의 주류로 구분하였으나, 日·EU 酒稅協議에서의 패널 보고서에서 소주와 보드카가 類似 製品('like' products)으로 판정되었음.
  - 따라서 보드카와 소주간의 주종 구분 문제에 있어 논란이 예상됨.

### 2. 酒種別 酒稅率

-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는 酒精에 대해서만 從量稅 체계로 과세하고 있으나 나머지 주류 제품에 대해서는 從價稅 체계로 과세하고 있음.
  - 現재 麥酒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13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위스키, 브랜디에 대해서는 1996년부터 10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소주는 餵食食과 증류식에 각각 35%와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또한 주세액의 10% 또는 30%(주세율 80% 이상 주류)를 세율로 하는 教  
育稅(附加稅)가 과세되고 있음(酒精, 濁酒, 藥酒類 가운데 藥酒 제외).

<表 1> 우리나라의 酒種 分類와 酒稅率(1997年 現在)

(單位: 원/千리터[酒精], %[實減量認定範圍, 酒稅率])

	규격	實 減 量 認 定 範 圍	酒 稅 率
酒 精	95°	1 이내	57,000
濁 酒	6° 이상	2 이내	5
藥 酒 類			
藥 酒	13° 이하	2 이내	30
清 酒	14° 이상	5 이내	70
麥 酒	25° 미만	3.5 또는 3 이내	130
果 實 酒	25° 미만	2 이내	30
燒 酒			
蒸 溜 式	30° 이상	2 이내	50
稀 釋 式	35° 이하	2 이내	35
위 스 키 類		2 이내	100
브 랜 디 類		2 이내	100
一 般 蒸 溜 酒		2 이내	80
리 큐 르		2 이내	50
其 他 酒 類			
알콜分 25度 미만		2 이내	70
엑스分 30度 이상		2 이내	10
알콜分 20% 이상		2 이내	100
其 他		2 이내	80

### 3. 酒稅收入과 酒類消費 現況

- 우리나라의 주세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증가율이 점차 둔화  
되는 추세에 있음.

- 이는 주류의 소비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류에 대한 세율이 하락한 데에 그 원인이 있음.
  - 최근 주세수입의 규모는 약 2조원 정도로 국세수입의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주류의 소비 증가율은 인구증가율에 제약을 받는바 주세수입 증가율의 둔화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表 2> 酒稅 收入(賦課基準)

(單位: 億圓)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國內分	10,892	12,185	12,884	15,264	16,724	18,430
輸入分	771	797	839	1,141	1,680	1,308
合 計	11,663	12,982	13,723	16,405	18,404	19,738

資料: 國稅廳.

-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현재 약 35억리터의 酒類가 출고되었는바 이를 국민 1인당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75~80리터 정도에 이릅니다.
- 최근에는 주류 소비량(출고량)의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음.
  - 주류 가운데 맥주가 전체 소비량의 약 6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으며, 燒酒가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두 가지 주류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주라고 할 수 있음.
  - 그 다음으로는 濁酒, 清酒, 위스키의 順으로 소비량이 많으며, 특히 위스키의 경우에는 최근 매우 높은 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表 3> 最近의 酒類 出庫 動向

(單位: 千리터)

	1993	1994	1995	1996
國內分				
濁酒	319,533	299,862	246,093	209,969
藥酒	2,668	3,018	3,195	2,625
麥酒	1,508,854	1,769,057	1,850,334	1,868,426
淸酒	48,478	50,095	43,302	42,564
果實酒	10,222	8,949	7,930	6,537
燒酒				
蒸溜式	715	862	816	980
稀釋式	743,964	765,180	761,839	787,320
酒精	208,986	221,159	221,293	248,838
위스키	11,595	15,205	16,488	13,768
브렌디	130	219	154	92
一般蒸溜酒	4,791	4,244	2,979	1,640
리큐르	5,683	6,274	8,520	15,543
其他酒類	488	560	633	756
國內分計	2,866,107	3,144,684	3,163,576	3,199,058
輸入分	99,815	149,672	193,816	269,557
總計	2,965,922	3,294,356	3,359,392	3,468,615

註: 1. 免稅出庫分은 除外하였으며, 酒稅賦課 時點 基準임.

2. 輸入酒類의 대부분은 위스키임.

資料: 國稅廳.

- 주류의 소비는 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인바 이에 따라 酒稅負擔도 소득과 역의 관계에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대동소이함.
  - o 이는 주류가 대중적인 소비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반면 위스키 등은 高價酒·高級酒로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세부담률이 높게 나타나는바 형평성 측면에서 주세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부담 분포가 累進的인 위스키 등에 대해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4. 日本의 酒稅 課稅現況

- 최근 日本의 酒稅收入은 약 2조 1천억엔 정도로 國稅 수입 점유비가 3.7~3.9% 정도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日本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세수입 증가율이 매우 미미함.

<表 4> 日本의 酒稅 課稅現況

(單位: 億엔, %, 千리터)

	1994	1995	1996 (豫算)
國稅	540,006	549,629	544,808
酒稅	21,127	20,609	21,110
占有比	3.91	3.75	3.87
酒種	課稅數量 (1994)	酒種	課稅數量 (1994)
清酒	1,243,124	위스키類 : 위스키	126,094
合成清酒	47,956	브랜디	26,071
燒酒: 甲類	329,855	스피릿類	26,658
乙類	275,237	리큐르	216,290
미림	91,874	雜酒	31,267
麥酒	7,085,713		
果實酒類: 果實酒	63,988		
甘味果實酒	8,273	計	9,572,408

註: 스피릿類는 우리나라의 一般蒸溜酒에 해당됨.  
 資料: 大藏省(1996).

- 日本의 주류 소비량(과세물량)은 1994년 현재 약 96억리터로 이를 국민 1인당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약 75리터 정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함.
- 다만 일본의 경우 맥주의 소비비중이 전체의 4분의 3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清酒가 13% 정도의 점유비를 나타내고 있음.

- 반면 소주는 소비비중이 약 6%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음.
  - 다음으로는 리큐르와 위스키類를 많이 소비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류 소비형태를 비교해 볼 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맥주, 위스키, 청주를 더 많이 소비하는 반면 소주는 우리나라가 절대적·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비함.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소주가 대중주이나 일본에서는 소주를 대중주로 보기 어려움.

## 5. EU 主要國의 酒稅率 體系

- 대부분의 EU 국가에서는 주세가 從量稅 체계로 되어 있음.
  - 그러나 핀란드에서는 일부의 低알콜 맥주 제품에 대해서만 從量稅 체계로 과세할 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從價稅 體系로 과세하고 있음.
- EU의 酒稅率 체계의 특징은 麥酒, 蒸溜酒, 와인 등 대부분의 주류에 대해 알콜 도수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임.
  - 특히 英國, 獨逸, 프랑스 등에서는 증류주의 경우 세율이 알콜 도수에 완전히 비례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나 일본과 달리 주종의 구분을 맥주, 증류주, 와인 등의 세 가지 정도로 단순화하고 있음.
- 앞서서도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從價稅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핀란드의 경우에도 맥주에 대해 低알콜製品을 제외하고는 알콜 도수에 따라 상이한 從價稅率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임.
- 麥酒나 와인보다는 蒸溜酒에 대한 세율을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음.

<表 5> EU 主要國의 酒稅率(1992年 現在)

(單位: 度, 파운드, 마르크, 프랑, 핀란드 마르크/百리터, %[핀란드])

	英 國		獨 逸*		프 랑 스*		핀 란 드	
	알콜도수	稅 率	알콜도수	稅 率	알콜도수	稅 率	알콜도수	稅 率
麥 酒		1.108 <sup>1)</sup>	~1.2 3.1 5 6.2~	7.13 10.70 14.26 21.39	~1.2 1.2~4.6 4.6~	3.50 11.00 19.50	~1.8 1.8~2.8 3.7~4.7 4.7~	非課稅 27 <sup>2)</sup> 30 40
蒸溜酒 <sup>3)</sup>	-	1,981	-	2,550	럼 와인系統 브랜디	4,495 6,930 7,810	38	60
와 인	~15 15~18 18~22 發泡性 와 인	125.96 217.25 250.59 208.00	發泡性 와 인	266	一般 샴페인 強化 其他	54.8 54.8 6,930 22	13 (一般) 19.6 (強化)	45  55

註: \* 맥주의 경우, 獨逸에서는 양조장별 생산량, 프랑스에서는 포장용기의 크기에 따라서도 稅率을 차등화함.

- 1) 발효 전 액체인 맥아즙 1000° gravity 초과 1° 당 稅率임.
- 2) 從量稅로 과세되는바 세율은 100리터당 27핀란드 마르크임.
- 3) 英國, 獨逸, 프랑스의 경우 순수알콜 100리터당 稅率임.

資料: Brazeau and Burr(1992).

### III. 韓·EU 酒稅協議 推移

#### 1. 最近의 酒稅 關聯 韓·EU 兩者協議

- 1990년대 초 우리나라의 주세율 과세체계, 소주와 위스키간 세율 격차 문제 등을 중심으로 수차에 걸쳐 韓·EC간에 酒稅協議가 개최되었음.
- EC측에서는 우리나라 酒稅의 과세체계를 從量稅 체계로 개편할 것과 일부 주류에 대해 세율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從量稅 체계로의 개편 요구는 철회하였음.
  - 다만 양자의 합의에 따라 위스키에 대한 주세율이 1994년과 1996년의 두 차례에 걸쳐 150% → 120% → 100%로 인하되었음.
  - 또한 증류주에 대한 관세율이 1994년과 1996년의 두 차례에 걸쳐 40% → 30% → 20%로 인하되었음.
  - 그동안 燒酒에 대해서는 教育稅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1995년부터 10%의 교육세가 부과되기 시작하였음.

#### 2. 最近의 韓·EU 酒稅協議 進行狀況

- 1996년에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日·EU 酒稅協議가 종결되어 燒酒와 위스키간의 세율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GATT 규정에 위배된다는 패널 보고서 나왔음.
- EU는 日本 酒稅에 대한 패널 보고서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주세제도가 수입

- 주류에 대해 여전히 차별적이라고 주장하여 재차 酒稅協議 개최를 요구함.
- 이에 지난 1월 17일 브뤼셀에서 회의를 가졌으며, EU에서는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특히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 격차를 최소 허용 수준으로 축소할 것을 우리측에 요구하였음.
    - 우리측은 시장에서의 소주의 위치와 소비자들의 음주형태, 위스키와 소주 간에 대체관계가 없다는 점 그리고 최근 위스키의 수입이 매년 40~50% 씩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EU측의 주장이 부당함을 주장하였음.
    - 그러나 EU에서는 지난 3월 15일까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세율 개편안을 제시할 것을 우리측에 요구하였음.
  - 3월 중순 우리 정부에서는 5월 중순에 양자협의를 개최하여 개편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EU측에 전달하였음.
  - EU는 4월 2일(4월 4일 접수) 주세 문제에 관한 GATT 제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협의개시를 요청하였음.
    - 즉 EU는 WTO에 제소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WTO 체제 밖의 양자협약도 제시하는 등 두 가지 경로로 우리나라의 주세 문제를 협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EU와의 양자협약과는 별도로 제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WTO 체제 내에서 협의를 개최하여 논의하게 되었으며, 여기서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패널이 구성되어 본격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하게 됨.
  - 韓·EU 酒稅協議의 주된 논쟁은 蒸溜酒에 국한된 것으로 이는 日·EU 酒稅協議와 칠레·EU 酒稅協議에서도 마찬가지였음.



## IV. 日·EU 및 칠레·EU 酒稅協議

### 1. 日·EU 酒稅協議의 結果

- 日本은 주세제도와 관련하여 EU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WTO에 제소당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각 1987년과 1996년에 패널 보고서가 나왔음.

#### 가. 第1次 酒稅協議

- 1986년에 EU(당시는 EC였음)는 日本의 주세가 GATT 제3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하여 日·EU 酒稅協議를 개시하였음.
  - 그러나 兩者協議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987년에 패널이 설치되어 본격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하여 패널 보고서가 작성되었음.
- GATT 제3조 제2항은 동질품('like' products) 및 직접경쟁 또는 대체관계(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에 있는 물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질품의 경우 동일 세율을 적용하고, 직접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최소 허용기준 정도의 세율 차이만 허용함.
- 1987년의 패널 보고서에서는 일본 주세법의 일부 조항이 GATT 제3조 제2항에 부합되지 않는다는(inconsistent) 결론을 도출하였음.
  - 패널은 GATT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대상 주류가 '동질품'인지 또는 '직접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지를 중점 조사하였음.

- 패널은 제품의 특성, 최종 소비형태, 상품 분류번호 등을 기준으로 진, 보드카, 위스키, 브랜디, 發泡性 와인 등을 동질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 또한 패널은 일반증류주, 위스키, 브랜디, 소주, 리큐르, 發泡性 와인 등이 직접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다는 결론도 도출하였음.
- 패널은 일본의 주세법이 상기 주류에 대해 차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국산 주류를 보호하고 수입 주류를 차별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 이에 일본에서는 소주와 위스키 등의 주류간에는 대체관계가 없으며 주세율 체계도 차별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패널은 일본의 주세율이 차별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기 주류간 대체관계가 근본적으로 왜곡되었다고 하여 일본의 주장을 기각하였음.

#### 나. 第2次 酒稅協議

- 第1次 日·EU 酒稅協議의 결과 일본은 燒酒의 稅率을 引上하고 위스키 등의 稅率을 引下하였으며, 위스키 등에 적용되는 증가세 부분을 철회하였음.
  - 그러나 EU는 여전히 日本의 주세제도가 소주와 위스키에 대해 차별적이라고 하여 1995년에 양자협의를 가졌으며, 1996년에 WTO에 제소하여 제2차 패널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그 결과 일본이 패소하였음.
- 第2次 日·EU 酒稅協議의 쟁점은, 1987년의 패널 보고서에 따라 일본 주세가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주세법이 여전히 소주와 보드카, 스피릿類(일반증류주), 위스키 등에 대해 세율을 차등화함으로써 국산 주류를 보호한다는 것이었음.

- 1996년에 작성된 패널 보고서에서는 소주와 보드카가 동질품이며, 소주와 스피릿類, 위스키, 브랜디 등은 직접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 이에 일본의 주세가 상기 주류에 대한 주세율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이라는 WTO의 결정에 따라 일본이 패소하였음.
- 그 결과 일본은 위스키의 세율은 대폭 인하하고 소주의 세율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주세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음.
- 개정 주세법안에서는 향후 5년에 걸쳐 소주와 스피릿類, 리큐르類는 알콜 도수 1도 및 1리터당 9,924엔으로 세율을 일치시키고, 위스키類의 세율은 3%의 차이를 두어 알콜 도수 1도 및 1리터당 10,225엔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였음.
  - 그러나 日·EU 酒稅協議가 패널의 결정에 따라 종결되었는바 WTO의 결정 내용을 15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日本이 향후 5년에 걸쳐 세율을 조정하는 법안을 확정시킬 경우에는 이 문제가 일본과 미국간에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WTO의 최종결정 내용을 담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GATT 제3조가 회원국에게 특정한 형태의 조세제도나 규제장치를 채택하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 회원국이 가지고 있는 제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EU가 동의한 바 있다'고 함.
- WTO 패널 보고서(1996) p. 58.  
 “The Community agreed that Article III does not require Members to adopt a particular system of taxes or regulations, or to harmonize with a system of a particular Member.”

<表 6> 日本의 酒稅率 調整

(單位: 度, 엔/千리터)

	알콜 度數	現行 (A)	改 正			
			1997.10.1~ 1998.9.30(B)	1998.10.1~ 2001.9.30(C)	2001.10.1~ (D)	稅率引上幅 (D-A)
燒酒	甲類	25 155,700 (6,228)	201,900 (8,076)	248,100 (9,924)	248,100 (9,924)	92,400
	乙類	25 102,100 (4,084)	150,700 (6,028)	199,400 (7,976)	248,100 (9,924)	146,000
위스키類	40	982,300 (24,558)	551,000 (13,775)	409,000 (10,225)	409,000 (10,225)	-573,300
스피릿類	37	367,300 (9,927)	367,188 (9,924)	367,188 (9,924)	367,188 (9,924)	-112
리큐르類	12	98,600 (8,217)	119,088 (9,924)	119,088 (9,924)	119,088 (9,924)	-20,488

註: 1. ( ) 안은 알콜分 1度當 從量稅率(額)임.

2. 스피릿類는 (一般)蒸溜酒를 말하며 보드카는 스피릿類에 포함됨.

資料: 財政經濟院.

## 2. 칠레·EU 酒稅協議의 進行狀況

- 칠레에서는 피스코(증류주의 일종)가 대중주로서 소비비중이 매우 높고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위스키에는 7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칠레에서는 포도주의 소비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맥주, 피스코, 위스키의 순임.
- 1996년 칠레-EU 기본협력협정의 최종 협상과정에서 EU는 칠레의 주세제도가 차별적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음.

- 이에 최근 칠레 정부에서는 알콜 도수에 따른 세율 격차를 4%로 축소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검토중임.
- 그러나 의회에 계류중인 칠레의 주세법 개정안에 대해 EU는 충분하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
- EU는 개선안에 따른 위스키와 피스코의 세율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경우 WTO에 제소할 것으로 알려져 있음.

### 3. 示唆點

- EU는 위스키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거나 경쟁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주류에 대해 위스키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GATT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에 근거하여 EU는 해당국과 주세협의를 개최하며, 합의 도달에 실패할 때에는 WTO에 제소하고 있음.
- 두 차례에 걸친 日·EU 酒稅協議의 결과를 보면, EU는 일견 유사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燒酒와 위스키에 대해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문제 삼아 日本을 WTO에 제소하였음.
  - 이에 日本은 燒酒와 위스키간에는 대체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EU는 현상적으로 양자간에 대체관계가 없는 듯이 보이더라도 그것은 차별적인 주세율로 인해 대체관계가 원천적·인위적으로 봉쇄되면서 소비자의 기호도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음.
  - 또한 EU는 第1次 日·EU 酒稅協議에 따라 위스키와 소주에 대한 세율 격차가 축소된 이후 日本에서 위스키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였다는 점이 양

- 자간에 경쟁관계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주장하였음.
- WTO의 패널은 EU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주와 위스키가 대체관계에 있다고 하여 피소국(일본)이 제시한 논거를 기각하였음.
- 이러한 전례는 우리나라에서 1994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위스키에 대한 세율을 인하한 이후 위스키의 시장점유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놓고 볼 때 韓·EU 酒稅協議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비록 日·EU 酒稅協議에서 EU의 주장이 채택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소주와 위스키의 주 소비자층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 일본과 달리 소주가 大衆酒라는 점 등의 차이점을 놓고 볼 때, 燒酒와 위스키가 대체관계에 있다는 EU의 주장은 부당함.
- 日·EU 酒稅協議에서, 피소국(일본)은 EU측 주장의 부당성을 입증하고자 대체탄력성에 대한 계량분석 결과와 시장조사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패널은 분석결과가 신빙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는바, 이에 따라 韓·EU 酒稅協議에 대비한 대응논리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많은 애로가 예상됨.
- 특히 GATT 및 WTO 체제하에서 자유무역 질서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EU가 우리보다 힘에 있어 우위에 있고 또한 日·EU 酒稅協議라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처가 필요함.
- 보드카와 소주의 경우에는 日·EU 酒稅協議에서 동질품으로 판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도 양자간의 구분에는 타당성이 작은 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이 양자의 세율이 다른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세율조정 또는 酒種의 재분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타국과의 주세협약에 있어, 동질품 또는 직접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주류에 대해서는 최소 허용기준 이내의 범위에서만 세율 격차를 인정할 뿐 본질적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EU의 기본 방침임.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燒酒와 위스키간에 대체관계가 없음에 대한 논리의 개발이 필요함.
  -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바, 그러한 경우에는 소주와 위스키간의 세율 격차가 최소 허용기준 이내로 축소되지 않는 한 韓·EU 酒稅協議에서 양자협약에 의한 협상타결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EU가 타국과의 주세 분쟁에 있어 중점적으로 논의한 대상은 蒸溜酒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임.
  - 또한 WTO 패널의 결정사항을 분석해 볼 때 알콜 도수의 차이에 따라 세율 격차를 두는 것은 허용하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EU 국가에서도 증류주에 대해서는 알콜 도수에 비례하여 세율을 책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알콜 도수 차이에 따른 세율 차등화는 일반적인 현상인 것으로 판단됨.
  
- 주세제도의 차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소국 및 피소국에서 모두 주세법 제정의 목적과 효과(aim and effect) 분석방법을 제안하였으나 패널은 이 방법으로는 조사의 객관성 유지 및 사실여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여 거부하였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세법이 수입 주류를 차별하려는 의도(목적)가 없다는 주장은 EU 또는 패널에 대해 설득력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므로 韓·EU 酒稅協議에서도 日本 등이 주장한 내용을 반복하는 정도로  
는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韓·EU 酒稅協議에서는 소주와 위스키간에 대체관계가 없음에 대  
한 보다 명확한 증거 제시가 필요함.
- 또한 대응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GATT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에  
서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가 불가피하게 수용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되도록 협상안을  
제시하는 자세가 필요함.



## V. 酒稅率 體系의 問題點과 改編의 必要性

### 1. 우리나라 酒稅率 體系의 問題點

- 세계 주요국의 주세율 체계를 보면 동종의 제품 또는 유사 제품으로서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만 알콜 도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경향이 있음.
  - 알콜 도수에 따라 주세율을 차등화하는 것은, 지나친 음주가 인체에 유해함을 인지하고 高알콜酒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음.
- 반면 우리나라의 酒稅率 體系는 알콜 도수나 주류의 특성보다는 계층별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 우선순위를 두어 세율이 책정되어 있음.
  - 서민 대중이 많이 소비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중·고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 동일한 蒸溜酒라고 하더라도 酒種에 따라 세율 격차가 큰 편임.
  - 탁주, 소주 등에는 5~35%(증류식 소주는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위스키와 맥주 등에는 100~13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이 가운데 맥주와 위스키간에 세율의 격차가 발생한 것은 1990년대 초의 韓·EC 酒稅協議의 결과 위스키의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임.
- 현행 주세법에서는 소주 또는 유사 주종 가운데 제조과정에서 자작나무숯으로 여과하는 경우에는 소주에서 제외하여 다른 주종으로 구분하고 있음.
  - 보드카는 자작나무숯으로 여과하기 때문에 일반증류주로 분류되어 소주보다 높은 8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2. 韓·EU 酒稅協議 關聯 懸案

- 韓·EU 酒稅協議에서 가장 큰 쟁점은 燒酒와 위스키의 稅率 隔差 문제임.
  - 日·EU 및 칠레·EU 酒稅協議에서도 보았듯이 韓·EU 酒稅協議의 핵심 논의대상은 蒸溜酒에 대한 것임.
  - EU는 日·EU 酒稅協議의 결정에 따라 GATT 제3조 제2항이 규정한바 소주와 위스키가 비록 동질품은 아니더라도 직접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자간의 세율 균등화를 주장하고 있음.
  - 그 밖에 日·EU 酒稅協議의 결정사항에 따르면 소주와 위스키뿐만 아니라 브랜디, 진, 럼 등의 스피릿類와 리큐르 등도 이들 주종과 직접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주세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대응논리 개발이 필요할 것임.
  - EU의 주장은 이미 日·EU 酒稅協議에서 승소한 바 있어 EU는 日本 주세제도에 대한 WTO 패널의 결정사항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韓·EU 酒稅協議에서는 燒酒와 위스키간에 대체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나, 그러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日·EU 酒稅協議와 유사한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燒酒와 위스키 및 이와 유사한 酒種에 대한 현재의 세율 격차를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함.
  -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사항, 즉 예를 들면 알콜도수의 차이에 따른 세율 격차는 최소 허용기준 이내의 범위에서 수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日·EU 酒稅協議의 결과 보드카와 소주가 동질품으로 판정되었는바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보드카와 소주의 주종 분류가 차등화되어 있는 것을 동일 주종으로 재분류하거나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3. 飲酒와 國民健康

-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는 稅負擔의 衡平性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음주에 따른 社會的 外部費用 측면은 소홀히 하고 있음.
- 물론 그러한 것이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대중주에 대한 세율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에 우리나라의 주류 소비량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에 따른 각종 폐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음주에 따른 폐해의 예로 알콜중독, 음주운전, 음주에 따른 생산성 감소, 주류 생산·소비에 따른 직·간접적인 수질오염 등 다수를 지적할 수 있음.
- 최근 범세계적으로 흡연이나 음주에 따른 폐해를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도 稅負擔의 衡平性뿐만 아니라 外部不經濟 측면도 고려하여 차제에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고가주·저가주의 구분이라는 단일 기준에 추가적으로 알콜 도수의 차이도 함께 고려하여 주세율 책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있음.

#### 4. 從價稅와 從量稅

- 많은 국가에서 酒稅의 과세체계를 從量稅 체계로 유지하고 있음.
  - 이는 시장경제가 발달하기 이전부터 술에 대한 소비 및 과세가 이루어졌는데 주세를 징수함에 있어 당시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음.
  - 시장경제가 형성된 이후에도 대부분의 주류 제조·유통업자가 종량세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체계가 유지되어 왔음.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주세의 체계가 종량세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그것이 반드시 바람직하기 때문임은 아님.
  - 이론적으로는 오히려 상대가격 구조 측면에서 從價稅 체계가 바람직함.
  
- 그러나 비록 상대가격 측면에서 종가세 체계가 보다 효율적이지만 종량세 체계하에서는 알콜 도수의 차이에 따른 세율 차등화가 종가세의 경우보다 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종가세와 종량세 체계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당사국의 전통과 관습, 문화적 배경, 납세 및 징세 관련 제반 환경, 납세의식, 납세 및 징세비용, 과세의 목적 등이 어떠한지에 달려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종가세 체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주세율 체계로서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우리나라의 주세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음.

## VI. 酒稅率 體系의 改善方案과 期待效果

### 1. 蒸溜酒間 稅率 隔差 問題

- 우리나라에서는 소주와 위스키가 소비자들의 소비형태와 주 소비자층 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큰 괴리가 있는바 직접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지 않음.
  - 따라서 위의 사실로부터 양자간에 직접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다는 EU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EU의 주장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를 개편할 필요는 없을 것임.
  
- 그러나 日·EU 및 칠레-EU 酒稅協議의 결과 또는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燒酒와 위스키간의 주세율 격차를 최소 허용기준(EU측에서는 1%로 주장)을 초과하여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음.
  - 일본에서 第1次 日·EU 酒稅協議에 따라 위스키와 소주의 세율 격차가 축소된 이후 위스키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였다는 점이 양자간의 대체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第2次 日·EU 酒稅協議의 패널 보고서가 있었음.
  -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 이후 위스키의 세율이 인하되면서 위스키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였는바, EU의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함에 있어 보다 신중해야 함.
  
- 따라서 소주와 위스키간에 직접경쟁 또는 대체관계가 있다고 EU측이 주장하고 그러한 방향으로의 개편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양자의 세율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이러한 논리는 여타의 一般蒸溜酒와 리큐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종량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경우를 보면 알콜 도수의 차이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종가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직 국제적으로 선례가 없는 사항임.
- 그러나 종가세 체계하에서도 알콜 도수 차이에 따른 세율 차등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이는 飲酒에 따른 社會的 外部費用 縮小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임.

## 2. 燒酒와 보드카의 關係

- 소주와 보드카는 제조공법상 여과수단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동일하므로 동일 주종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여과수단(자작나무숯인지의 여부)의 차이가 보드카와 소주의 주종 분류를 차별화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구분 기준인지에 대한 명확한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임.
  - 따라서 보드카와 소주를 인위적으로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3. 酒稅率 體系 改編의 基本方向

- 주세율 체계의 개편을 위해서는 韓·EU 酒稅協議의 前提條件, 즉 燒酒와 위스키간의 직접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대한 사실규명이 필요함.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燒酒와 위스키간에 경쟁 또는 대체관계가 없다는 것을 EU 또는 WTO 패널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차선책으로 양자간의 세율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함.

- 또한 통상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를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개편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현행 종가세 체계의 기본을 유지하면서 국제규범을 수용하는 수준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韓·EU 酒稅協議에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개편방향을 고려해야 함.
- 燒酒와 위스키의 경우에는 알콜 도수당 세율을 동일하게 하는 것을 검토하되 주세 정책의 기본방향을 세부담의 衡平性뿐만 아니라 外部不經濟 측면도 고려하여 설정함.
  - 다만 從價稅 체계하에서는 알콜 도수의 차이에 따른 세율 차등화 문제가 있어 아직 확립된 규범이 없는바 EU가 주장하는 최소 허용기준을 충족시켜 주는 수준에서 주세율 체계를 설정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함.
  - 보드카와 소주에 대한 정의를 통일하거나 또는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주세율 체계 개편에 있어 附加稅인 教育稅의 稅率도 함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이상과 같은 기본 개편방향은 직접적으로 韓·EU 酒稅協議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韓·EU 酒稅協議에 있어 불가피하게 직접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주종에 대한 주세율을 알콜 도수에 관계없이 완전히 동일하게 개편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러한 방향으로의 개편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타 주종에 대해서도 세율 체계의 형평성 및 외부불경제 등을 감안하여 주세율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 증류주 이외의 주종의 경우에는 韓·EU 酒稅協議와는 관련이 없지만 이와 별도로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차원에서 현실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편방향을 모색함.

#### 4. 改善方案

- 本節에서는 改善方案을 모색함에 있어 燒酒와 위스키간에 대체관계가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과, 外部不經濟 측면을 고려한 것, 그리고 알콜 도수에 관계없이 모든 蒸溜酒에 대해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극단적인 경우 등 모두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

##### 가. 燒酒와 위스키間 代替關係가 없는 경우

- 燒酒와 위스키간에 직접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다는 EU의 주장은 일반적 상식에 어긋남.
-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를 EU의 주장에 따라 개편할 필요가 없음.
- 따라서 EU측 주장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주세제도에 대한 개편은 불필요하므로 현행 세율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안을 고려함.
- 그러나 현행 주세율 체계가 외부불경제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만큼, 현행 세율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면서 추가적으로 개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節을 참조하기 바람.



#### 나. 蒸溜酒 稅率에 대한 알콜 도수 比例方案

-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는 衡半性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外部不經濟 측면이 상대적으로 소홀한바 後者를 주세율 결정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추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
  - 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EU의 주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燒酒와 보드카, 위스키의 세율 조정방안
  - 소주와 보드카, 위스키, 여타의 蒸溜酒, 리큐르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되 다만 알콜 도수에 비례하여 세율을 적용함.
  - 기본세율은 각 방안에 따라 알콜 도수 1도당 2.5%, 2.0%, 3.25%로 설정함.
  - 이 경우 세율의 차등은 알콜 도수의 차이에 의해서만 比例的으로 나타남.

#### 다. 蒸溜酒 稅率 一致方案

- 우리나라 주세의 과세체계는 종가세 체계인바 몇몇 국가에서만 그러한 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종가세 체계하에서 알콜 도수 차이에 따른 주세율 격차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이 없음.
- 따라서 蒸溜酒 전반에 걸쳐 동일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에 대비하여 모든 증류주에 대해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함.

#### 라. 酒稅分 教育稅率의 改善方案

- 酒稅分 教育稅에 대한 稅率은 기본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함.
  - 현행 교육세의 세율은 주세율 80%를 기준으로 주세액의 10% 또는 30%로 차등화하고 있으나 이미 주세율이 차등화된 상태에서 교육세율까지 차등화하면 주류별로 총소비세 부담률의 격차가 더욱 확대됨.
  - 따라서 주세분 교육세율은 균등화·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함.
- 酒稅率 體系를 개편함에 있어 국내 주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에 개편하기보다는 3년 정도의 시한을 두고 연차적·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마. 기타 酒類에 대한 酒稅率 調整方案

- 맥주에 대한 주세율이 위스키보다 높은 것은 형평성 측면뿐만 아니라 외부 불경제 측면에서도 당위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위스키에 대한 세율 수준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맥주의 세율을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주세 수입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바 단기적으로 맥주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최근 경기부진에 따라 세수여건이 악화되어 정부 예산을 약 2조원 가량 감축할 예정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내년에도 호전될 가능성이 작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맥주 세율을 인하하면 세수가 추가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 따라서 맥주는 세율 인하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위와 같은 현실적 제약 때문에 단기적으로 맥주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바. 改善方案 綜合

- 第1案은 소주와 위스키가 직접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다는 EU측 주장의 부당함이 입증될 경우로서 현행 세율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이며 다만 맥주의 경우에는 위스키보다 세율이 높은 것이 문제인바 중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임.
- 第2~4案은 주세율을 알콜 도수에 비례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동종의 주류라고 하더라도 알콜 도수의 차이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임.
  - 이에 따라 알콜 도수 25도의 소주와 40도의 위스키, 35도의 리큐르에 대한 세율의 상대비는 5:8:7(또는 1:1.6:1.4)임.
  - 위스키(40도 기준)의 세율을 100%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소주(25도 기준)의 세율은 이에 비례하여 62.5%로 설정함(제2안).
  - 위스키 세율을 80%로 인하하는 경우 소주 세율은 50%로 설정함(제3안).
  - 위스키 세율을 130%로 인상하는 경우 소주 세율은 81.25%로 설정함(제4안).
- 第5案은 알콜 도수에 관계없이 증류주에 대해 모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임.
-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주세율 개편안을 제안하면 다음의 <表 7>과 같음.
  - 다만 맥주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선방안에서는 中期的인 조정방향을 제시함.

<表 7> 酒稅率의 改善方案

(單位: %, 度)

	蒸 溜 酒				알콜 도수 1 도 당 稅 率	麥 酒
	燒 酒	위스키, 브랜디	一般蒸溜酒	리 큐 르		
現行 稅率	35	100	80	50		130
알콜 度數 基準	25	40	40	35		-
第 1 案	35	100	80	50	-	100
第 2 案	62.5	100	100	87.5	2.5	100
第 3 案	50	80	80	70	2.0	80
第 4 案	81.25	130	130	113.75	3.25	130
第 5 案	100				-	100

註: 1. 향후 3년에 걸쳐 세 차례 정도의 調整을 통해 最終 稅率로 수렴함.  
 2. 酒精, 濁酒, 淸酒, 果實酒 등의 경우에는 現行 稅率 體系를 유지함.

<表 8> 酒稅分 教育稅率의 改善方案

(單位: %, 度)

現 行	改 善 方 案		備 考
酒稅率 80%를 基準으로 10%와 30%로 차등	第 1 案	單一稅率 10% 적용	酒精과 濁酒는 除外
	第 2 案	單一稅率 20% 적용	
	第 3 案	單一稅率 30% 적용	

## 5. 期待效果

### 가. 通商問題와 衡平性 및 外部不經濟

- 第1案은, 燒酒와 위스키간에 직접경쟁 또는 대체관계가 없음이 입증될 경우에 국한하여 타당성을 가질 수 있으나, 만약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채택 가능성이 작음.
  - 다만 EU측 주장의 부당성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제1안은 주세제도의 합리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 第2~5案의 경우에는 '동질품'이나 '직접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주종간 세율 격차가 제거되므로 주세제도의 차별적 요소가 없어짐.
  - EU가 주장하는 세율 격차 문제가 해소되므로 통상마찰의 요인이 제거됨.
  - 세율 조정에 따라 주종간 상대가격 구조가 변화하여 주종간 시장점유율이 다소 변화할 것으로 사료됨.
  - 이 경우 소주의 수요가 다른 주종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바 대부분 맥주 등의 수요 증가로 나타나는 반면 위스키에 대한 수요변화 효과는 별로 없을 것임.
  - 소주의 수요 감소로 인해 소주 제조회사의 경영압박이 예상됨.
  - 특히 대부분의 소주 제조사는 현재 결손을 내고 있기 때문에 세율을 인상할 경우 상당 부분을 경영 합리화 등을 통해 흡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세율 조정이 연차적·점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희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알콜 도수에 따라 주세율이 차등화되기 때문에 稅負擔의 衡平性뿐만 아니라 음주에 따른 外部不經濟 縮小 측면도 상당 부분 반영됨.
- 高알콜酒에 대한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주류 소비패턴의 변화가 예상되는 바 이는 곧 사회적 외부비용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나. 價格 및 物價效果

- 燒酒와 一般蒸溜酒, 리큐르의 경우 세율을 인상하면 가격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燒酒의 경우 가격인상의 絶對額은 크지 않으며, 보드카 등의 일반증류주와 리큐르는 가격이 수백원에서 1천원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蒸溜式 燒酒의 경우에는 세전가격이 위스키 등보다 높기 때문에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가격인상 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됨.
- 燒酒의 경우 세율 및 가격의 인상에 따라 生産者物價 및 消費者物價 모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위스키(브렌디)는 소폭의 가격인하가 예상되는바 물가가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는 물가가 다소 상승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中期的으로 맥주의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물가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물가상승 효과가 상쇄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蒸溜式 燒酒의 경우에는 가격인상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물가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으나 蒸溜式 燒酒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물가인상 효과는 매우 미미함.

<表 9> 酒稅率과 教育稅率 調整에 따른 出庫價格 變化效果

(單位: ml, 度, 元)

	燒 酒				위 스키, 브랜디			一般蒸溜酒	리큐르	麥 酒	
	一 般	김삿갓	안동소주	문 배 주	패스포트	원저프리미어12年	발렌타인30年	크리스탈(보드카)	캡 틴 큐		
製品 用量	360	360	800	700	360	700	750	700	700	500(0B)	
알콜 度數	25	25	45	40	40	40	43	40	35	4	
1996年 價格	稅 前	232.67	628.16	11,726.41	10,221.64	3,171.58	10,000.00	112,980.86	1,140.82	1,818.18	242.61
	稅 後	354.47	957.00	19,993.53	17,427.89	8,026.62	25,300.00	285,841.58	2,560.00	3,100.00	717.88
第1案 稅後價 (差異)	354.47 (0)	957.00 (0)	19,993.53 (0)	17427.89 (0)	8,026.62 (0)	25,300.00 (0)	285,841.58 (0)	2560.00 (0)	3100.00 (0)	613.80 (-104.08)	
第2案 稅後價 (差異)	447.89 (93.42)	1209.21 (252.21)	30,312.77 (10,319.24)	24,736.37 (7,308.48)	7,675.22 (-351.40)	24,000.00 (-1,100.00)	284,598.79 (-1,242.79)	2,760.78 (200.78)	4,100 (1,000)	587.12 (-130.76)	
第3案 稅後價 (差異)	409.50 (55.03)	1,105.56 (148.56)	26,830.03 (6,836.50)	22,037.86 (4,609.97)	6,837.93 (-1,188.69)	21,560.00 (-3,740.00)	252,534.82 (-33,306.76)	2,459.61 (-100.39)	3,680 (580)	523.07 (-194.81)	
第4案 稅後價 (差異)	505.48 (151.01)	1,364.68 (407.68)	35,536.89 (15,543.36)	28,784.14 (11,356.25)	8,931.17 (904.55)	28,160.00 (2,860.00)	332,694.74 (46,853.16)	3,212.55 (652.55)	4,730 (1,630)	683.19 (-34.69)	
第5案 稅後價 (差異)	563.06 (208.59)	1,520.15 (563.15)	28,377.91 (8,384.38)	24,736.37 (7,308.48)	7,675.22 (-351.40)	24,200.00 (-1,100.00)	273,413.68 (-12,427.90)	2,760.78 (200.78)	4,400 (1,300)	587.12 (-130.76)	

註: 1. 一般蒸溜酒와 리큐르는 稅後價格으로부터 稅前價格을 逆算한 것임.  
 2. 稅後價格은 稅包含 工場渡價格 基準임. 단 麥酒의 稅後價格(1996年)은 稅前價格에 1997年의 酒稅率(130%)를 適用하여 算出한 것임.  
 3. 教育稅는 모든 酒類에 대해 20%의 동일 稅率을 適用하였음(第2案). 단, 第1案의 경우에는 現행 教育세율을 적용하였음에 유의하기 바람.

<表 10> 酒稅率과 教育稅率 調整에 따른 物價效果

(單位: %)

		燒 酒	위스키, 브랜디	一般蒸溜酒, 리큐르	麥 酒
第1案	生産者物價	-	-	-	-0.126
	消費者物價	-	-	-	-0.088
第2案	生産者物價	0.098	-0.005	0.002	-0.158
	消費者物價	0.079	-0.004	0.007	-0.111
第3案	生産者物價	0.057	-0.018	-0.001	-0.236
	消費者物價	0.047	-0.013	-0.004	-0.166
第4案	生産者物價	0.158	0.014	0.008	-0.042
	消費者物價	0.128	0.010	0.023	-0.029
第5案	生産者物價	0.218	-0.005	0.002	-0.158
	消費者物價	0.177	-0.004	0.007	-0.111

註: 消費者價格은 出庫價格 變化率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物價加重指數를 이용하여 直接效果만을 산출하였음.

다. 稅收效果

- 第1案은 現行 稅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現行 酒稅율에는 아무런 變化가 없으며 따라서 酒稅수입에도 아무런 變化가 없음.
  - 그러나 教育稅율이 단일稅율 체계로 改편됨에 따라 教育稅 수입은 약간 變化할 것으로 예상됨.
  
- 第2~4案의 改善방안에 따라 稅율을 調整하였을 경우에는 소주와 리큐르의 稅율調整에 따라 稅수가 최대 5백억~2천억원 정도 증가(맥주 제외)할 것으로 尙料됨.
  - 다만 알콜 도수의 차이에 따른 稅율 격차가 허용되지 않는 第5案의 경우



- 에는 소주로부터 약 5천억원 정도의 세수가 증수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는 소주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변화 효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경우 실제 세수변화는 이보다 작을 것임.
- 위스키의 경우에는 第1~2案과 第5案의 경우 주세율 변동이 없으나 교육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교육세의 세수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주세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맥주에 대한 세율이 인하되는 경우에는 주세 수입이 매우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최근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여건 악화로 재정수지의 악화가 우려되는바 맥주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맥주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비록 당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현 시점에서 맥주의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은 현실적이지 못함.
    - 맥주의 경우에는 稅收 및 財政與件과 기타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長期的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表 11> 酒稅率과 教育稅率 調整에 따른 稅收效果

(單位: 億원)

		燒 酒	위스키, 브랜디	一般蒸溜酒	리 큐 르	麥 酒
第1案	酒 稅	0	0	0	0	-3,150
	教育稅	0	0	0	0	-950
第2案	酒 稅	1,750	0	9	200	-3,150
	教育稅	550	-300	-2	70	-2,000
第3案	酒 稅	950	-600	0	109	-5,250
	教育稅	400	-400	-4	49	-2,400
第4案	酒 稅	2,950	900	23	346	0
	教育稅	800	-100	1	96	-1,350
第5案	酒 稅	4,100	0	9	272	-3,150
	教育稅	1,050	-300	-2	81	-2,000

註: 1996年度 物量 및 價格을 基準으로 최대치를 추정한 것이며 教育稅의 세율은 20%로 가정하였음. 단, 第1案의 경우에는 現행 教育稅率을 그대로 적용하였음.

## VII. 맺음말

- 우리나라의 酒稅率 體系는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 치중하고 있음.
  - 반면 음주에 따른 사회적 외부불경제 측면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음.
  - 최근 음주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外部不經濟 측면도 감안하여 주세율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를 형평성과 외부불경제의 두 가지 측면에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韓·EU 酒稅協議에 있어 소주와 위스키 등의 주류간에 직접경쟁 또는 대체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이와 아울러 주세율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소주와 위스키간 세율 격차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韓·EU 酒稅協議 문제는 이미 국제적으로 日·EU 酒稅協議라는 先例가 있는 사안인 만큼 우리나라가 현행 주세율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쟁점 사항인 증류주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세율 격차가 크기 때문에 현재의 세율 격차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日·EU 酒稅協議에서 보듯이 논의의 핵심은 유사 주종간 세율 격차 축소에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주류소비패턴을 고려할 때 燒酒와 위스키간에 직접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다는 EU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알콜 도수의 차이에 따른 세율 차등화는 이미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바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EU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從量稅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알콜 도수의 차이에 따른 세율 차등도 종량세 체계하에서 확립되어 있는 만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함.
  - 그러나 EU 가운데 핀란드의 경우에는 주세 체계가 從價稅 구조로 되어 있으며 맥주의 경우에는 알콜 도수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핀란드의 사례를 원용한다면 從價稅 체계하에서도 알콜 도수 차이에 따라 주세율 체계(특히 증류주의 경우)를 차등화할 수 있을 것이므로 대외협상에 임해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한 방향으로의 개편은 비단 EU와의 통상협상을 떠나서라도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를 합리화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야 하는 사항임.
  
- 外部不經濟 측면에서 볼 때 高알콜酒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위스키 등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보다는 소주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주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EU와의 협상에 있어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外部不經濟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는 만큼 우리의 思考를 전향적으로 轉換할 필요가 있음.

- 酒稅率 體系 개편에 있어서는 국내 주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 정도의 시한을 두고 연차적·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 韓·EU 酒稅協議가 WTO 패널의 판결로 이행하여 종결되는 경우에는 이행의무기간이 15개월로 단축되는바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參考文獻

- 朴宗淇, 「韓國의 消費稅制: 酒稅制度를 中心으로」, 『研究論文集』, 仁荷大學校 産業經濟研究所, 1988.
- 成明宰, 「消費稅에 대한 都·農別 所得階層別 稅負擔 및 逆進度 實態分析에 관한 研究」, 『財政論集』, 第8集, 韓國財政學會, 1993.
- \_\_\_\_\_, 「우리나라 都市家口의 階層別·年齡別 消費稅 負擔 分布에 관한 研究」, 『財政金融研究』 제3권, 제1호, 韓國租稅研究院, 1996.
- 成明宰·金珍洙, 『個別消費稅制의 政策課題와 改善方向』, 研究報告書 93-08, 韓國租稅研究院, 1993.
- 李啓植·裴竣皓, 「우리나라의 間接稅 負擔分布 分析」, 郭泰元·李啓植(編), 『租稅 政策과 稅制發展』, 研究報告書 86-01, 韓國開發研究院, 1986.
- 崔 洸, 「酒稅의 課稅理論과 政策課題」, 1992.
- 大藏省, 『財政金融統計月報』, 1996.4.
- Brazeau, Ron and Nancy Burr, edited by Margo Dewar and Howard Collins, *International Survey: Alcoholic Beverage Taxation and Control Policies*, Eighth Edition, Brewers Association of Canada, 1992.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 Report of Panel, 1996(第2次 日·EU 酒稅協議 패널 報告書).